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1731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6. 11. 15.

판결 선고 2016. 12.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508,626원 및 그 중 60,638,496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3. 9.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3. 9. 2. 접수 제616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3. 9.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4.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83,886,72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83,886,7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6.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을 1억 원, 보증기한을 2016. 5. 6.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1)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인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2)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등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5. 6.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한을 2016. 5. 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2014. 1. 7.경 원금 연체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2.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1,364,766원(원금 60,416,657원 + 이자 948,109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726,270원을 회수하였으며, 이후 이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870,13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B은 형제지간인 피고 C으로부터 2013. 2. 7. 5,000만 원, 같은 해 8. 30. 2,000만 원, 같은 해 9. 2.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3. 9. 2. 피고 C와 피고 B 소유의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B은 2006. 10. 27.경 장모인 피고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3. 9. 16. 피고 D와 피고 B 소유의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2. 10. 해지를 원인으로 2014. 2. 13. 말소되었다.

사. 또한 피고 B은 2014. 1. 10. 피고 D와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3억 8,8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2. 13.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508,626원(대위변제금 61,364,766원 - 회수금 726,270원 + 채권보전비용 870,130원) 및 그 중 60,638,496원(대위변제금 61,364,766원 - 회수금 726,2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및 피고 D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할 무렵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되어 있어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② 피고 회사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과 가까운 2014. 1. 7. 신한은행에 원금 변제를 연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14. 6.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앞서 본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에 의할 때 그 체결 이전에 이미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 피고 B의 재산상태

1)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2013. 9. 2., 같은 달 16.) 및 매매계약 체결일(2014. 1. 10.) 당시 피고 B의 재산상태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적극재산2) 합계 : 2013. 9. 2. 및 같은 달 16. 기준으로 587,080,162원/ 2014. 1. 10.

기준으로 592,080,162원

나) 소극재산3) 합계 : 715,508,626원

다.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 D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근저당권계약 및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피고 회사는 우리은행 계좌의 2014. 1. 14.자 거래잔액이 68,589,000원에 이르는 등 2014. 1.경의 적극재산이 896,180,162원이었고, 또한 피고 회사는 기업은행 계좌의 2014. 7. 21.자 거래잔액이 189,010,109원에 이르고, 2014. 7. 25. 17,170,86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그 사업이 순조로워 채무초과 상태나 도산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각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 B에게 사해의사도 없었으며, 피고 C, D는 선의의 수익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앞서 본 피고 C, D가 드는 사정들은 모두 피고 B에 관한 사유가 아닌 피고 회사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각 사해행위 당시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이 896,180,162원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 B의 사해의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②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시기,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각 체결 시기, 피고 B, C, D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C, D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피고 C 관련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관련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이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의 가액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 목적물에 제3자 명의의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 확정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나 가처분채권자가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서 있어서 승낙의무 있는 이해관계인도 아니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그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더구나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어떠한 사유로든 원물 반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의 부담이 새로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에게 그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만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2014. 4. 16. 청구금액 9,500만 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새로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액배상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의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일 당시 사해행위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6.경 위 부동산의 시가가 49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단되며, 위 매매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18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를 공제한 잔존 담보가치는 원고의 변론종결일 당시 채권액 83,886,723원(앞서 본 61,508,626원 및 그 중 60,638,496원에 대한 2014. 6. 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1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위 83,886,7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원고에게 83,886,7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찬우

별지

1) 다만 소장 청구취지 제3의 다. (2)항 기재 "위 가.항 기재 금원"은 "위 다.항 (1)항 기재 금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자세한 내역은 별지 적극재산 목록 기재와 같다.

3) 자세한 내역은 별지 소극재산 목록 기재와 같다.